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30 34478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 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제3조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021. 12. 16.>

제4조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 2023. 3. 21.>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제6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정·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

다.

제7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24. 4. 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3.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준수할 것

제10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 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12조 (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등의 준수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2023. 3. 21.>

제14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5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제공 기한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지도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2023. 3. 21.>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3.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2023. 3. 21.>

1.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서류의 열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 2023. 3. 21.>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사실의 통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통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3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비치의 확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

8.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8조 및 이 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21. 12. 16., 2023. 3. 21.>
1. 법 제1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및 그 지급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업인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4의3. 법 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선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31507,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32223,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부칙 <32297,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33225,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부칙 <33341, 2023. 3. 2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4478,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